

대법원 2017도9794

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고영한)은 2018. 6. 15. 박재호 국회의원[더불어민주당(부산 남구을)]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**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**하여,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, 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**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도9794 판결)

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¹⁾

▣ 사안의 내용

- 피고인 박재호는 2016. 4. 13.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남구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임
- 피고인 박재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, 부정선거운동,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,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·방조한 혐의로 공소제기됨
 - ① 피고인 박재범, 김성경, 반선호(이상 당시 부산 남구 구의회의원)와 공모하여 2015. 9. 1.경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‘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’를 가장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, 이후 위 민원상담소를 이용하여 등산모임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함
 -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지위에서 피고인 박승준(당시 선거대책총괄본부장)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에게 지역 유권자들의 약

1) 이하, 이 사건 9명의 피고인들 중 피고인 박재호에 대한 부분만 정리함.

400여 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함

- ③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피고인 조현일(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)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캠프 구성원과 부산 남구을 거주 주민들이 참석하는 조직회의를 개최하고 수십 명 내지 15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함
- ④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확성장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함²⁾
- ⑤ 선거공보에 사실은 출생지가 ‘경주군 외동읍’ 임에도 ‘부산’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함
- ⑥ 선거캠프에서 이루어진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사실의 적발을 막기 위하여, ㉠ 피고인 박재범과 공모하여 2016. 9. 7. 피고인 박승준 등에게, ㉡ 피고인 박재범, 이수경과 공모하여 2016. 9. 8. 피고인 반선호, 장형근에게, 선거사무소와 거주지(피고인 박재호의 아파트)에서 보관하던 범행 관련 증거자료 등을 빼내어 은닉하도록 증거은닉을 교사·방조함³⁾

■ 소송 경과

- 제1심 : ②, ③, ④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90만 원 선고하고, ①, ⑤, ⑥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
- 원심 :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③, ④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, ②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함. 무죄부분인 ①, ⑤, 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
- ② 부분의 무죄이유 : 제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선거운동원의 참고인 진술조서, USB 파일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, 증거능력 없는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함

2) 총 3회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, 제1심에서 그 중 2016. 3. 11.자 무료급식소에서의 확성장치사용 부정선거운동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,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분리·확정됨.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확성장치 부분에 대한 것을 전제로 정리함.

3) 방조는 원심에서 비로소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됨.

- 그 외 나머지 유·무죄 판단 근거는 제1심과 같고, 원심에서 추가된 증거 인멸방조에 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방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
-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제기
 -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상고 제기
 -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상고이유를 주장하며 다툼

2. 대법원의 판단

▣ 사건의 쟁점

● 공직선거법 관련

-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인 지지호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,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)
-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확정장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제91조 제1항)
-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유사기관(제89조 제1항)에 해당하는지 여부

● 형사소송법 관련

-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루어진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
-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행해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수색과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유무

▣ 판결의 결과

-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(피고인 박재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확정)

▣ 판단의 근거

- 원심의 근거와 동일함

3. 판결의 의의

-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인 지지호소행위는 구 공직선거법(2010. 1. 25. 법률 제 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규정과 달리 반드시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와 결부되어 행해질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지지호소행위의 태양⁴⁾에 비추어 이를 위와 같이 허용되는 지지호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을 비롯하여, 위에서 언급한 관련 쟁점들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

4) 조직회의에 참석한 수십 명 내지 150여 명 참석자들 앞에서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함.